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36호 2024. 3. 25.(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510호(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511호(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513호(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516호(2024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대상업소 모집 공고) 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518호(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대상업소 모집 공고) 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521호(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522호(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9

회							
람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 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2024.5.17. 시행 예정)되어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문화재,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장 등)를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등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 제5조)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103, FAX 749-7079

○ E-mail : rath0610@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호 보행관련시각매체 종류란 중 “문화재설명표지”를 “국가유산 설명표지”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2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사회봉사활동 :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u>문화재지킴이</u> ,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생략) ② (생략)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 <u>국가유산지킴이</u> , -----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 -----.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 6. (생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국가유산</u> ----- 6. (현행과 같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별표] 공공시설물 심의·자문 대상 및 검토사항(제7조제2항 관련)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생략 1. · 2. (생략) 3. 공공시각매체 <table><tr><th>분류</th><th>종류</th><th>심의</th></tr><tr><td>교통관련 시각매체</td><td>생략</td><td rowspan="4">공비 1억 초과</td></tr><tr><td>보행관련 시각매체</td><td>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u>문화재설명표지</u>,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td></tr><tr><td>영상정보 시각매체</td><td>생략</td></tr><tr><td>환경연출 시각매체</td><td>생략</td></tr></table>	분류	종류	심의	교통관련 시각매체	생략	공비 1억 초과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u>문화재설명표지</u>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생략	환경연출 시각매체	생략	[별표] 공공시설물 심의·자문 대상 및 검토사항(제7조제2항 관련)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시각매체 <table><tr><th>분류</th><th>종류</th><th>심의</th></tr><tr><td>교통관련 시각매체</td><td>현행과 같음</td><td rowspan="4">공비 1억 초과</td></tr><tr><td>보행관련 시각매체</td><td>----- ----- -----, <u>국가유산설명표지</u>, -----</td></tr><tr><td>영상정보 시각매체</td><td>현행과 같음</td></tr><tr><td>환경연출 시각매체</td><td>현행과 같음</td></tr></table>	분류	종류	심의	교통관련 시각매체	현행과 같음	공비 1억 초과	보행관련 시각매체	----- ----- -----, <u>국가유산설명표지</u> , -----	영상정보 시각매체	현행과 같음	환경연출 시각매체	현행과 같음
분류	종류	심의																							
교통관련 시각매체	생략	공비 1억 초과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u>문화재설명표지</u>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생략																								
환경연출 시각매체	생략																								
분류	종류	심의																							
교통관련 시각매체	현행과 같음	공비 1억 초과																							
보행관련 시각매체	----- ----- -----, <u>국가유산설명표지</u> , -----																								
영상정보 시각매체	현행과 같음																								
환경연출 시각매체	현행과 같음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13. (생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12.·13. (현행과 같음)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26조(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재, 붕괴, 폭발 6. ~ 10. (생략) ③ (생략) [별표 2] <u>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u>(제15조 제1항 관련) <table><tr><th>재난관리 주관기관</th><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th>연수구 주관부서</th></tr><tr><td>교육부 ~ 행정안전부</td><td>1. ~ 23. (생략)</td><td>(생략)</td></tr><tr><td>문화재청</td><td>24. <u>문화재</u> 시설 사고</td><td>(생략)</td></tr><tr><td>산림청</td><td>25. · 26. (생략)</td><td>(생략)</td></tr></table>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연수구 주관부서	교육부 ~ 행정안전부	1. ~ 23. (생략)	(생략)	문화재청	24. <u>문화재</u> 시설 사고	(생략)	산림청	25. · 26. (생략)	(생략)	제26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국가유산</u> ----- 6.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table><tr><th>재난관리 주관기관</th><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th>연수구 주관부서</th></tr><tr><td>교육부 ~ 행정안전부</td><td>1. ~ 23 (현행과 같음)</td><td><u>현행과 같음</u></td></tr><tr><td><u>국가유산청</u></td><td>24. <u>국가유산</u> -----</td><td><u>현행과 같음</u></td></tr><tr><td>산림청</td><td>25. · 26 (현행과 같음)</td><td><u>현행과 같음</u></td></tr></table>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u>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u>(제15조 제1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연수구 주관부서	교육부 ~ 행정안전부	1. ~ 23 (현행과 같음)	<u>현행과 같음</u>	<u>국가유산청</u>	24. <u>국가유산</u> -----	<u>현행과 같음</u>	산림청	25. · 26 (현행과 같음)	<u>현행과 같음</u>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연수구 주관부서																							
교육부 ~ 행정안전부	1. ~ 23. (생략)	(생략)																							
문화재청	24. <u>문화재</u> 시설 사고	(생략)																							
산림청	25. · 26. (생략)	(생략)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연수구 주관부서																							
교육부 ~ 행정안전부	1. ~ 23 (현행과 같음)	<u>현행과 같음</u>																							
<u>국가유산청</u>	24. <u>국가유산</u> -----	<u>현행과 같음</u>																							
산림청	25. · 26 (현행과 같음)	<u>현행과 같음</u>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2024.5.17. 시행 예정)되어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도입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용어(문화재, 문화재관리학 → 국가유산, 국가유산관리학 등)를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5.(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103, FAX 749-7079
- E-mail : rath0610@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붙임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 2]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문화관광과 분장사무란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문화관광과 단위업무란 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지정 국가유산 관리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학예연구직렬의 학예일반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

별표 5의2의 제2호 시설직렬의 건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	------------------------------------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10조 관련)	【별표 1】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10조 관련)								
<table border="1">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부 서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분 장 사 무</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관광과</td><td> 1. ~ 21. 생 략 <u>22.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3. ~ 32. 생 략 </td></tr> </table>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1. ~ 21. 생 략 <u>22.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3. ~ 32. 생 략	<table border="1">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부 서 명</th><th style="text-align: center;">분 장 사 무</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화관광과</td><td> 1. ~ 21. 현행과 같음 <u>2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3. ~ 32. 현행과 같음 </td></tr> </table>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1. ~ 21. 현행과 같음 <u>2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3. ~ 32. 현행과 같음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1. ~ 21. 생 략 <u>22.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3. ~ 32. 생 략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1. ~ 21. 현행과 같음 <u>22.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23. ~ 32.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현행	개정안																																																								
[별표 1] 구 본청의 사무전결사항	[별표 1] 구 본청의 사무전결사항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table><tr><th>단 위 업 무</th><th>실무자</th><th>담당</th><th>과장</th><th>국장</th><th>부구청장</th><th>구청장</th></tr><tr><td>1. ~ 17. 생 략</td><td colspan="6">생 략</td></tr><tr><td>18. 지정 문화재 관리</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19. ~ 23. 생 략</td><td colspan="6">생 략</td></tr></table>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1. ~ 17. 생 략	생 략						18. 지정 문화재 관리	기안		○				19. ~ 23. 생 략	생 략						<table><tr><th>단 위 업 무</th><th>실무자</th><th>담당</th><th>과장</th><th>국장</th><th>부구청장</th><th>구청장</th></tr><tr><td>1. ~ 17. 현행과 같음</td><td colspan="6">현행과 같음</td></tr><tr><td>18. 지정 국가유산 관리</td><td>기안</td><td></td><td>○</td><td></td><td></td><td></td></tr><tr><td>19. ~ 23. 현행과 같음</td><td colspan="6">현행과 같음</td></tr></table>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1. ~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지정 국가유산 관리	기안		○				19. ~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1. ~ 17. 생 략	생 략																																																								
18. 지정 문화재 관리	기안		○																																																						
19. ~ 23. 생 략	생 략																																																								
단 위 업 무	실무자	담당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1. ~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지정 국가유산 관리	기안		○																																																						
19. ~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현행	개정안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 격구분표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제27조 관련) <table><tr><th colspan="2">계급</th><th rowspan="2">연구관·연구사</th></tr><tr><th>직렬</th><th>직류</th></tr><tr><td rowspan="2">학예연구</td><td>학예일반</td><td>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td></tr><tr><td>미술~국어</td><td>생략</td></tr><tr><td>편사연구 ~ 방재안전연구</td><td>생략</td><td></td></tr></table>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국어	생략	편사연구 ~ 방재안전연구	생략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 격구분표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제27조 관련) <table><tr><th colspan="2">계급</th><th rowspan="2">연구관·연구사</th></tr><tr><th>직렬</th><th>직류</th></tr><tr><td rowspan="2">학예연구</td><td>학예일반</td><td>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td></tr><tr><td>미술~국어</td><td>현행과 같음</td></tr><tr><td>편사연구 ~ 방재안전연구</td><td>현행과 같음</td><td></td></tr></table>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재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국어	현행과 같음	편사연구 ~ 방재안전연구	현행과 같음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국어	생략																									
편사연구 ~ 방재안전연구	생략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재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국어	현행과 같음																									
편사연구 ~ 방재안전연구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23조제1항 관련) 1. 생략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23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 항공	생 략					
시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 리기술자 (보수기 술자)(12)	건축사 문화재 수리기 술자(보 수기술 자)(9)	문화재 수리기 술자(보 수기술 자)(6)	문화재 수리기 술자(보 수기술 자)(3)	문화재 수리기 술자(보 수기술 자)
	디자인	생 략				
속기 ~ 운전	생 략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 항공	현행과 같음					
시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 수리기술 자(보수 기술자)(1 2)	건축사 국가유 산수리 기술자 (보수기 술자)(9)	국가유 산수리 기술자 (보수기 술자)(6)	국가유 산수리 기술자 (보수기 술자)(3)	국가유 산수리 기술자 (보수기 술자)
	디자인	현행과 같음				
속기 ~ 운전	현행과 같음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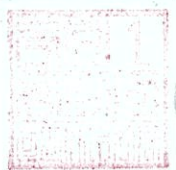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1. 등록 및 폐기 사유: 옥련1동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 2. 등록 공인의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2024. 3. 25.(월)
- 3. 공인명 및 인영

☐ 등록공인 목록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등록사유	비고
옥련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2.1cm	옥련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인증기 교체	인증기용

☐ 폐기공인 목록

공 인 명	공인(인영)	공인의 규격	폐기사유	비고
옥련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2.1cm	옥련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인증기 교체	인증기용

2024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대상업소 모집 공고

연수구에서는 안전한 음식문화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2024. 3. 22.(금) ~ 2024. 4. 9.(화) 18일간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에 한한다.

다. 지원요건

공통사항

- 신청일 기준, 관내 영업신고(신규 및 영업자지위승계일 기준) 업소에 한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에 따른 대상
- 區 정책(위생등급제, 우수업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소 우선 선정·지원
- 면적 200㎡ 이하 업소
 - * 단,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면적 제한 제외
- 2023년 주방문화개선 지원업소 제외
-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3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업소 제외

사업별 지원조건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 및 연장 신청 업소에 한함
 -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우선 지역 업소 우선 지원
 - 식중독 발생 우려 또는 위생관리 미흡 품목 취급 음식점 우선 지원
- 식문화개선 실천 지원
 - 區 정책(위생등급제, 우수업소 등) 참여 및 신청 업소 우선지원

라. 사업예산 : 50,000천원 ※ 예산 범위내 지원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및 지원 규모

- 1)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희망) 업소 중 일반분야 평가부분에 해당되는 사항 관리에 소요되는 청소 자금을 50만원 한도 내 무상 지원
- 2) 식문화 개선 실천 등을 위한 덜어먹기 식기구, 위생적 수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50만원 한도 내 무상지원
- 3) 위생 향상을 위한 주방 등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중 후드·환기시설 청소 소요자금은 50만원 한도 내 무상지원 및 후드·환기 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그 외 소요자금은 300만원 한도 내 자부담금 50%
- 4)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가. 지원범위

1) 주방환경개선

사 업 명	후드 및 환기 시설 청소	후드·환기시설 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범위	후드 및 환기 시설 청소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위생장비·설비 및 용품 구입 · 후드·환풍기 교체 지원 · 환기시설 보강지원 ·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입식의자 설치 · 개방형 주방 구조 시설 개·보수 ·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영업신고 면적 내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 설치 · 기타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지원금액	업소별 50만원 한도(자부담 0%)	업소별 300만원 한도(자부담 50%)

2) 식문화 개선 실천 지원

사 업 명	식문화개선 실천 지원
지원범위	· (덜어먹기 실천) 덜어먹기 식기 및 소형찬기 구입 · (위생적 수저관리) 수저소독기, 수저 포장지 등 구입 · (친환경 음식문화조성) 다회용 포장용기 및 물품 구입
지원금액	업소별 50만원 한도(자부담 0%)

3)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사 업 명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지원범위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일반분야」중 객석/객실, 조리장* 분야 청소비 지원 * 객석/객실 : 천장, 벽, 바닥, 선풍기, 에어컨, 창문, 창문틀 등 객석/객실 내 청소 ** 조 리 장 : 냉장·냉동고, 냉방기, 식품창고 등 조리장 내 청소
지원금액	업소별 50만원 한도(자부담 0%)

나. 신청방법

1)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방문화개선 참여 신청 및 계획서(서식 1) 1부.
- 현장사진 및 견적서 · 타 업체 비교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각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위생등급제 컨설팅 신청시,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서(서식 2) 1부.
- 건물주 시설 개선 동의서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시설개·보수에 한함)

2) 개선완료 후 제출서류

공통사항

- 주방문화개선 자금지원신청서(서식 3) 1부.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 사업 평가 설문 조사서(서식 5) 1부.
- 시설개선 또는 물품구입 사진

주방환경개선(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 장비구입: 물품내역이 나온 카드영수증 사본 1부.
 - 현금구입시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 : 물품내역이 나온 카드영수증 사본
 - * 물품내역이 안 나온 카드영수증 제출 시엔 거래명세서 추가제출
- 시설 개 · 보수
 - 시설 개 · 보수 등 현황(서식 4) 1부.
 -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후드·환기시설 청소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1부.

식문화개선 실천(위생용품 구입)

- 물품구입증빙서류 : 물품내역이 나온 카드영수증 사본 1부.
 - 현금구입시 :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시 : 물품내역이 나온 카드영수증 사본
 - * 물품내역이 안 나온 카드영수증 제출 시엔 거래명세서 추가제출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지원(청소비)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3) 접수방법 및 문의처

- 메일접수: 메일(kanghr1112@korea.kr)
- 방문접수: 연수구청 3층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032-749-7954)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신청자) 공고모집	연수구청 홈페이지
② 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사업자(신청자) → 區 위생정책과
③ 서류검토, 현장 확인	區 위생정책과
④ 사업자(신청자) 선정	위원회 심의 및 선정
⑤ 선정결과 통보	區 위생정책과 → 사업자(신청자)
⑥ (보템e) 회원가입 및 사용자정보등록	사업자(신청자)
⑦ (신한은행)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 신한은행에서만 발급진행	사업자(신청자)
⑧ (보템e) 민간보조사업등록(수행사업계획)	사업자(신청자)
⑨ 주방문화개선 완료 후 자금신청서 제출	사업자(신청자)
⑩ (개선완료) 자금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區 위생정책과
⑪ (보템e) 교부신청	사업자(신청자)
⑫ (보템e) 집행 및 실적보고	사업자(신청자)
⑬ 지원금 지급	區 위생정책과 → 사업자(신청자)

※ 업소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직접 **보템e시스템을 통해 수행사업계획, 교부신청, 집행내역등록 등 작업을 직접 하셔야 지원금 교부**

※ 선정된 업소 한해서, 보템e시스템 매뉴얼 안내 예정

4. 선정평가

가. 지원업소 선정

주방문화개선 신청업소 공개 모집 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에 따라 지원 업소를 선정한다.

나. 서류 및 (사전·사후) 현장 확인

-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2) 개선 계획 및 지원신청서 등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 3) 시설 개·보수에 따른 공사 시, 담당 공무원은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사항 등을 확인한다.
- 4) 시설 개·보수 등 공사완료 후, 담당 공무원은 사후 현장 확인 시 제출 서류에 따라 개선된 시설·설비 등을 확인한다.

다. 최종선정

- 1) 지원업소 선정은 위원회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 2) 적정성이라 함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개선 계획서의 실효성,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3) 선정 시에는 영업의 종류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영업의 형태 중 한식, 중식, 일식 등의 분포도 및 영업장 규모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 4)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출 서류의 구비, 진위 여부, 개선 계획의 실효성 등은 담당 공무원이 검토한다.

5.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가 직접 수행하며,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은 사후 교부한다.

다.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혹은 교부받은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지원신청 사업자는 일정기간(식문화개선 실천 1년, 그 외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2) 업종 변경 등을 위해 폐업 후 관내에 신규 영업 신고한 업소에서 지원받은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의거 관내에 업소의 소재지 이전 후 지원받은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 4)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상 지위승계 후 승계자가 지원받은 사항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마. 지원신청 사업자는 식사문화개선 지침을 이행하도록 종업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구(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붙임
1. 주방문화개선 참여 신청 및 계획서 1부.
 2.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1부.
 3. 주방문화개선 자금 지원 신청서 1부.
 4. 시설 개·보수 현황 1부.
 5. 사업 평가 설문서 1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대상업소 모집 공고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영업주들에게 영업소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로 근본적 문제해결 및 영업주 역량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대상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연수구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맞춤형 컨설팅)

나. 사업기간: 2024. 4. 15.(월) ~ 2024. 6. 14.(금) / 3개월

다. 지원대상: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15개소

라. 사업내용: 사전진단 1회, 컨설팅 3회, 만족도 조사 1회

- 경영진단*을 통한 업소별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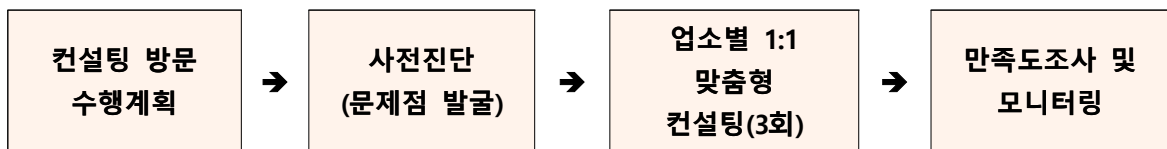
*메뉴개발, 배달서비스,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손익관리, 마케팅, 노무·세무 중 희망 컨설팅 분야 선택

- 위생관리 및 위생등급제 컨설팅 우선 지원

- 위생등급제 기준 업소 위생 현황 점검
- 위생등급제 획득을 위한 업소 개선 방안 컨설팅
- 주방 및 화장실 등 위생등급제 기준의 부착물 제공 및 현장지도

- 전 업소 위생등급제 신청 필수

마. 사업절차



2. 세부추진내용

가. 신청업소 경영진단(1회)

- 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한 점포 환경 및 업주 수요 조사
- 업소 기본현황, 점포 내·외부 시설 환경(주차장, 출입구, 간판, 카운터 등), 업소별 손익분석, 메뉴, 서비스, 홍보방법, 업소 요구도, 영업주 참여의지 등
-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사전 안내
- 맞춤형 컨설팅 방향 설정

나. 맞춤형 1:1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2~3회)

- 사전진단 후 수립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업소별·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사전진단 결과에 따른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 배치
- 컨설팅 내용 : 희망 컨설팅 분야 선택

구분	컨설팅 내용
경영관리	○매장 매출분석 등 손익관리 ○메뉴 원가분석, 식재료 원가절감 등 원가관리, 인건비 관리, 기타비용 관리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도출
마케팅관리	○온·오프라인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도구 활용 등 마케팅 tool 구축 ○포장·브랜드 디자인·간판·점포 리모델링 등 각종 디자인 개발 등
위생·식재료 관리	○HACCP 인증 등 각종 위생인증 정보제공 및 지원 등 ○안전한 식재료 위생관리 및 안정적 식재료 수급관리 등
법률지원	○노무·세무·법무 문제 해소를 위한 자문
메뉴개발	○상권을 고려한 메뉴 추천 및 추천메뉴 조리방법 전수 ○시그니처 메뉴, 시즌 메뉴 등 메뉴개발 ○포장·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메뉴개발 등 ○현재 운영 메뉴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메뉴 상품력 강화 방안 : 담음새, 식재활용, 스토리 등

다. 영업주 대상 집체 교육(1회)

구 분	교육주제(안)	비 고
사업설명(0.15H)	○컨설팅 수행방법 및 업소의 기대효과	
온라인 홍보(1H)	○네이버 포털 마케팅: 스마트플레이스, 예약설정 방법 등 ○인스타그램 마케팅: 스토리 활용 및 릴스 등 ○리뷰 마케팅: 영수증리뷰, 해시태그 이벤트, 체험단 등	
친절서비스(1H)	○고객맞이 친절서비스	

라. 컨설팅 수행결과 만족도 조사

3. 신청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3. 22.(금) ~ 4. 9.(화) (19일간)

나. 접수방법: e-mail (kanghr1112@korea.kr)

▷ 신청서 등 서식: 연수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http://www.yeonsu.go.kr>)

※ 접수결과 신청업소 미달일 경우, 재공고 예정

4. 자격요건

가. 우선지원

- 區 정책(위생등급제, 우수업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소 우선 선정·지원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수료 창업자
- 위생관리가 시급한 업소
- 위생관리 및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나. 신청제한

- 24년 타지자체, aT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외식컨설팅을 지원사업 선정업소
- 신청일 기준 현재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인 업소
- 영업신고 후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직영·가맹점)

5. 구비서류

가.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다.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약서 1부<서식3>

라.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대상업소 통보

가. 선정통보: 개별 통지 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고

7.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단, 연수구가 요청하는 경우는 추가보완 서류 제출)
- 나.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다. 문 의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담당 (☎032-749-7954)

- 붙임 1.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3.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약서 1부.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이 시행(2023.6.28.)되어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기준이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에 사용된 만 나이 표현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만 나이 표현(만 65세 → 65세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7.(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103, FAX 749-7079

○ E-mail : rath0610@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후원사업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 및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① -- ----- ----- ----- ----- ----- ----- ----- ----- ----- ----- ----- ----- ----- -----
1. 만 65세이상 노인 세대	1. 65세-----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7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u>만 18세</u> 이상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하되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단,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① ----- ----- <u>18세</u>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①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둔 <u>만 20세</u> 이상의 주민이 정비·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① ----- ----- ----- ----- ----- ----- <u>20세</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노인”이란 만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u>65세</u> ----- -----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의 이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30 감면	2. -----
가.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u>만 15세</u>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가. ----- -----. ----- -- <u>15세</u> -----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③ ④ (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12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감면)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50 감면	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만 65세</u> 이상인 사람	나. <u>65세</u> -----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개정이유

「만 나이 통일법」(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이 시행(2023.6.28.)되어
‘만 나이’가 법적·사회적 기준이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에 사

용된 만 나이 표현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만 나이 표현(만 65세 → 65세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7.(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103, FAX 749-7079

○ E-mail : rath0610@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붙임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 2]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만 65세”를 “65세”로,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9세”를 “9세”로,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9세” 및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면) ① ~ ③ (생략)	제10조(임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장의 정년은 <u>만 65세</u> 로 하고, 그 밖에 센터 직원의 정년은 <u>만 60세</u> 로 한다.	④ ----- <u>65세</u> ----- ----- <u>60세</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행	개정안
제5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각 예술단별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연령)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합창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u>만 18세</u> 이상의 여성(단, 반주자, 성악코치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	2. ----- ----- <u>18세</u>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소년소녀합창단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u>만9세</u> 이상 <u>만18세</u> 이하의 청소년 또는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다만, 반주자, 성악코치는 지역 및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 ----- <u>9세</u> ----- <u>18세</u> ----- ----- ----- ----- -----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u>만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만 19세</u> 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 1. ----- <u>19세</u> ----- ----- . ----- <u>19세</u> ----- ----- -----. 2. (현행과 같음)